



【검토보고서】

2018.10.11.(목)
제298회 임시회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유연】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양주시장(환경관리과장)

나. 제출일 : 2018년 10월 2일

2. 제안이유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전기자동차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설치 경비 지원(안 제5조)

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마. 충전시설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안 제7조)

바. 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나. 입법예고 : 2018. 8. 7. ~ 2018. 8.27.(20일간)

다. 부서협의 :

1) 협의기간 : 2018. 7. 9. ~2018. 7.27.(15일간)

2) 협의결과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
- 미세먼지 발생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및 보급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보급, 재정의 지원범위, 운행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임

< 조례의 구성 >

구분	내용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조례제정 목적
제2조	정의	전기자동차의 정의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름
제4조	보급촉진계획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	재정지원	재정지원의 범위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관리 위탁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제9조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 및 양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4) 보급촉진 계획(안 제4조)

제4조(보급촉진 계획)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보급촉진 계획에 포함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5) 재정지원(안 제5조)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
- 의정협의회는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명시 의견은 차종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현재 매년 지원 단가가 변동되고 있어 조례상 구체적 명시는 어려움
예) 2017년 대당 19백만원 보조(국 14백만원, 시 5백만원) - 균등지급
2018년 대당 최고 17백만원 보조(국 12백만원, 시 5백만원) - 차등지급
2019년 대당 최고 15백만원 보조(국 9백만원, 시 6백만원) - 차등지급

[관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년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기준]

< 차종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

(단위:천원)

구분	보조금(대당)				
	제작사	차종	계	국비	시비
승용	현대	코나 EV	17,000	12,000	5,000
		아이오닉 N, Q(17년)	16,270	11,270	5,000
		아이오닉 I(17년)	16,190	11,190	5,000
		아이오닉(18년 HP)	16,260	11,260	5,000
		아이오닉(18년,PTC)	16,190	11,190	5,000
	기아	SOUL EV(18년,HP)	15,440	10,440	5,000
		SOUL EV(18년,PTC)	15,270	10,270	5,000
		RAY EV	12,060	7,060	5,000
	르노삼성	SM3 Z.E(18년)	15,170	10,170	5,000
		SM3 Z.E(17년)	13,390	8,390	5,000
	BMW	i3 94Ah(18년)	15,910	10,910	5,000
		i3(17년)	13,070	8,070	5,000
	한국지엠	VOLT EV	17,000	12,000	5,000
	테슬라	Model S 75D	17,000	12,000	5,000
		Model S 90D	17,000	12,000	5,000
		Model S 100D	17,000	12,000	5,000
		Model S P100D	17,000	12,000	5,000
닛산	LEAF	13,490	8,490	5,0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7,000	4,500	2,500
	대창모터스	Danigo	7,000	4,500	2,500
	세미시스코	D2	7,000	4,500	2,500
화물	파워프라자	라보 Peace	16,000	11,000	5,000

6)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6조)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양주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3.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충전인프라 설치,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음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7) 충전시설 보급 확대(안 제7조)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효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8) 관리위탁(안 제8조)

제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9)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안 제9조)

제9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가 자문 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시행규칙(안 제15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종합의견

-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 생태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그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세먼지 발생억제 등 대기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취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시행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단계를 고려한 적정한 지원방안과 시에 무리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친환경 자동차 이용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비예산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전기자동차의 공공 및 민간 충전시설 설치현황을 주기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동시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차량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사항과 충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참고적으로 지난 의정협의회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위치의 구체적 명시 의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시설 등) 및 경기도 관련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 조례에 별도로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그 외 특별한 의견은 없음

[충전시설 설치대상시설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본조신설 2016. 6. 30.]

[충전시설 설치대상시설 관련 경기도조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교육청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참고자료]

양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현황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 지원규모 : 전기자동차 75대 구매지원(최대 17,000천원 차등지원)
- 사업비 : 1,288,000천원(국비 72%, 시비 28%)
- 보조금 지원 차량

< '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18년 4월 기준) >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 GM	BMW	한국 닛산	테슬라	대창 모터스	씨미 시스코	파워 프라자
아이오닉 ('17, '18)	코나	RAY	SOUL	SM3	트위지 (초소형)	볼트	i3	LEAF	모델 S70D, s90D, s100D, P100D	다니고 (초소형)	D2 (초소형)	라보 PEACE

※ 기아자동차 니로 등 7월에 승인된 차량도 지원 가능

- 지원자격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접수 가능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현황

- 2017년 집행현황 : 152,000천원(8대 지급완료)
- 2018 집행현황(이월포함) : 74대 중 69대 집행완료(2018. 9월 말 현재)

구분	예산액	보급대수	집행대수	집행금액	비고
2018년 (이월포함)	1,288,000천원	74대	69대	1,160,860천원	

- 관용 전기자동차 집행 : 3대(보건행정과 2, 회계과 1) 집행완료

○ 차종별 지원 보조금 (2018년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기준)

구분	보조금(대당)				
	제작사	차종	계	국비	시비
승용	현대	코나 EV	17,000	12,000	5,000
		아이오닉 N, Q(17년)	16,270	11,270	5,000
		아이오닉 I(17년)	16,190	11,190	5,000
		아이오닉(18년 HP)	16,260	11,260	5,000
		아이오닉(18년,PTC)	16,190	11,190	5,000
	기아	니로	17,000	12,000	5,000
		SOUL EV(18년,HP)	15,440	10,440	5,000
		SOUL EV(18년,PTC)	15,270	10,270	5,000
		RAY EV	12,060	7,060	5,000
	르노삼성	SM3 Z.E(18년)	15,170	10,170	5,000
		SM3 Z.E(17년)	13,390	8,390	5,000
	BMW	i3 94Ah(18년)	15,910	10,910	5,000
		i3(17년)	13,070	8,070	5,000
	한국지엠	VOLT EV	17,000	12,000	5,000
	테슬라	Model S 75D	17,000	12,000	5,000
		Model S 90D	17,000	12,000	5,000
		Model S 100D	17,000	12,000	5,000
		Model S P100D	17,000	12,000	5,000
	닛산	LEAF	13,490	8,490	5,0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7,000	4,500
대창모터스		Danigo	7,000	4,500	2,500
세미시스코		D2	7,000	4,500	2,500
화물	파워프라자	라보 Peace	16,000	11,000	5,000

□ 관내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2018. 7월 현재)

권역별	충전기 설치 위치		설치내역		비 고
	시설명	주소	급속	완속	
	총계	20개소, 32대	11	21	
	양주시청	부흥로 1533	2	2	
백석읍 (1개소, 2대)	백석농협	백석읍 중앙로 197	1	1	
은현면 (1개소, 1대)	은현면사무소	은현면 은현로66		1	
광적면 (2개소, 2대)	가남공영주차장	광적면 가남리709-38	1		
	광적가석지구공영주차장	광적면 가남리 870-5	1		
장흥면 (2개소, 3대)	장흥면사무소	장흥면 권율로7	1		
	장흥관광지(하천변)	장흥면 석현리 386-2	1	1	
양주권역 (5개소, 8대)	고읍(만송동) 공영주차장	만송동 689-4번지		1	
	고읍(광사동) 공영주차장	광사동 688번지		1	
	고읍(3) 공영주차장	광사동 679-2		1	
	농협양주농수산물유통센터	부흥로 1907번길 182		3	
	하늘물근린공원 주차장	고읍남로 205		2	
회천권역 (8개소, 12대)	덕정노외공영주차장	덕정동 138-54	1		
	회천2동주민센터	평화로 1475번길 39		1	
	LF스퀘어 양주점	평화로 1593	1	1	
	회천3동주민센터	회정로 143	1		
	회천4동주민센터	옥정로 397-7	1		
	덕정역사 공영주차장	덕정동 350-271번지		2	
	여성보육비전센터 주차장	고암길 226		2	
덕정지구(2) 공영주차장	고암동 588-3번지		2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계획현황

권역별	충전기 설치 위치		설치내역		비 고
	시설명	주소	급속	완속	
	총계	7개소, 11대	11		
백석읍	꿈나무도서관	백석읍 오산리 548-4	1		
은현면	에코스포츠센터	은현면 하패리 1077-4	2		
양주권역	양주희망도서관	삼송동 202-36	1		
회천권역	회암사지박물관	울정동 301-9	2		
옥정동	옥정중앙공원	옥정동 864-1596	2		
옥정동	선돌공원	옥정동 580	2		
장흥면	장흥문화체육센터	장흥면 호국로 176-14	1		

※ 공공용 충전시설 설치비용(경기도사업)

- 급속 : 5,000만원(지원 3,000만원, 사업자부담 2,000만원)
- 완속 : 500만원(지원 300만원, 사업자부담 200만원)